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마을과 만나 내일을 만드는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채용 공고

【노원구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마을과 만나 내일을 만드는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청년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3. 23.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마을과 만나 내일을 만드는 청년일자리』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04. ~ 2021. 12.(9개월)

다. 사업내용

- 마을 네트워크 및 지역주도 사업에 관련 업무
- 기타 기관 업무 보조

※사업 참여 청년들에 대한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2.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기간 : 2021. 4. ~ 2021. 12.(9개월)

라. 근로시간 : 주5일, 1일 8시간

마. 보 수 : 월200만원 (식대 및 4대 보험 근로자분 포함)

바. 기타지원 : 직업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

사. 채용형태

구 분	인원	근무시간	담당업무	비고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명	09:00 ~ 18:00 (화~토 근무)	노원휴먼라이 브러리 업무 전반	채용기간 (2021.4~2021.12)

※ 초과근무 및 수당 없음 / 8시간 근무기준 적용 필요시 근무시간 변경

아. 근로계약: 동 사업 지침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필수

자. 근무지: 노원휴먼라이브러리

3. 응시자격

가. (필수) 2021년 현재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나. (필수) 거주지

- 노원구 거주자, 사업기간 내 노원구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 신청 가능하나 사업참여자 선정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노원구 전입 필수

나. (필수)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라. (필수) 제외대상

- 대학(원) 재학생(단, 방송통신대 또는 야간대학 재학생은 가능)
- 공무원 임용대기자, 기업 등 취업예정자
-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참여자 및 동 사업 23개월 이상 참여 경력자
- 근로 예정인 '고용주' 사업장 근무 중 1년 이내 퇴사자 및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

마. (우대사항) 사서자격증 소지자,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영상 편집 가능자 등

4. 공고 및 원서 접수

가.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 2021. 3. 23.(화) ~ 4. 5.(월)
- 접수 : 2021. 3. 30.(화) ~ 4. 5.(월),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교부: ※ 첨부 파일 확인

다.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human@nowonlib.kr (제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응시_홍길
동)

라. 제출서류

- ① 사업참여신청서(필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필수)
- ③ 이력서(필수)

- ④ 자기소개서(필수)
- ⑤ 주민등록등본(필수)
- ⑥ 경력증명 및 자격증명(해당자)
- ⑦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해당자). 각 1부

※ 이메일 접수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 또는 이미지파일로 첨부하나, 선정된 자는 추후 원본제출 필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5. 선발방법

- 가. 1차 서류 선발 : 2021. 4. 7.(수)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 나. 2차 면접 선발 : 해당자에 일정 통보
 - 다. 면접예정일: 2021. 4. 9.(금) ※ 일정 변동 시 개별 공지
 - 라. 면접장소: 개별 공지
 - 마. 합격자 발표: 2021. 4. 10.(토), 개별통보
 - 바. 채용이의신청: 2021. 4. 12(월)
 - 사. 근로시작: 2021년 04월 13(화) 예정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다.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시험 결과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채용서류 반환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바. 본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원휴먼라이브러리(02-950-0041)으로 문의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